

#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8,752,603	13,162,578
일반회계	420,991,720	12,629,752
특별회계	17,760,883	532,826
기타특별회계	17,760,883	532,826
상수도	12,123,053	363,692
의료급여기금	1,877,544	56,326
기초생활보장기금	2,170,000	65,100
주민소득지원기금	255,468	7,664
주택사업	268,200	8,046
회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332,269	9,968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532,369	15,971
공유임야관리	201,980	6,05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15,63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162,578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